



목재펠릿보일러 · 난로 지원 기준

2020. 1.



이 기준은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라 산림청장이 보급하는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준으로 모든 해석의 권한은 산림청에 있으며 해당 법령 등에 대한 기준은 별도의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.

순 서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 . 보급대상 보일러·난로 | 1 |
| 1. 보일러·난로 기본 요건 | 1 |
| 2. 보일러 등록 및 심의 | 2 |
| 3. 보일러 기준가격 결정 | 2 |
| II . 보급사업 지원기준 및 대상자 선정 | 3 |
| 1. 보일러·난로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| 3 |
| 2.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| 5 |
| III . 보일러·난로의 계약 및 설치 | 6 |
| 1. 표준계약서의 사용 | 6 |
| 2. 계좌등록 및 자부담금 납부 | 6 |
| 3. 보일러·난로 설치 장소 | 7 |
| 4. 보일러 및 난로 설치·제조업체 책임사항 | 7 |
| 5. 설치완료 및 대금청구 | 8 |
| IV . 보급제품 품질보증 및 위반업체 처분사항 | 9 |
| 1. 열효율 개선명령 | 9 |
| 2. 부품 개선명령 | 9 |
| 3. 제품 교환 및 환급 | 9 |
| 4. 자격 정지 | 10 |
| 5. 등록 취소 | 11 |
| 6. 기타 사항 | 12 |
| V . 제조업체의 소비자 교육·안내 및 점검 이행 .. | 12 |
| VI . 사후관리 및 보급현황 제출 | 12 |
| VII . 기타 참고사항 | 14 |
| [붙임] 1 ~ 6 서식 | 15 |

목재펠릿보일러 · 난로 지원 기준

- ◆ 이 기준은 산림청에서 보급하는 목재펠릿보일러(58.14kW이하) 및 난로에 대하여 품질 향상을 통한 소비자 신뢰 향상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적용한다.

I 보급대상 보일러 · 난로

1 보일러 · 난로 기본 요건

- 보일러 :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(신·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9-11호) 또는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인증(산업표준화법 제17조)에 따라 KS 인증된 목재펠릿 온수보일러(58.14kw 이하)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 중 산림청에 설치된 목재펠릿보일러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평가 결과 합격한 것에 한함
 - ① 열효율 : 발열량 80% 이상일 것(KS B 8901 인증 기준)
 - ② 300리터급 축열조를 부착할 수 있을 것
 - 산림청에서는 축열조가 부착된 상태로 적정성 평가를 하며,
 - 실제 설치 시에는 설치 공간 등에 따라 관계 공무원과 협의하여 용량을 변경하거나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
- 난로 : 목재펠릿 난방기(난로)는 단체표준(SPS-KFIC-A-001-2082)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단체표준 표시를 인증 받은 제품에 한함
 - ① 목재펠릿 전용난방기로 열효율 80% 이상
 - ② 일산화탄소(CO)에 대한 가스발생경보장치를 설치하여 가스 발생 시 경보기 알람작동과 함께 난방기 작동을 자동 정지시키는 안전장치를 확보할 것

② 보일러 등록 및 심의

- (등록신청) 보일러 제조업체*가 자사 보일러를 보급 대상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, <붙임1>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.
 - * 보일러 제조업체의 보급사업 참여 자격은 II-① 참고
 - *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당연 탈락으로 처리
- (등록심사기간) 심사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되 원가계산용역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1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
- (심의) 다음과 같이 목재펠릿보일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함
 - (구성인원) 5명 이상의 내·외부 전문가
 - (심의내용) 인증기준 통과여부 및 보일러 가격, 사후관리 계획, 내구성, 품질개선 노력, A/S 이행사항, 업체건실성 등
 - (심의결과) 위원회 합의를 통해 보급업체 등록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며, 보급대상으로 확정되면 산림청에 등록 및 홈페이지 공지
 - * 심의결과는 합격, 불합격, 개선권고 등으로 구분
 - * 홈페이지 공지 내용 : 인증기준에 따른 성능 검사표, 부품의 모델명·제조사 및 기타 소비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등

③ 보일러 기준가격 결정

- (원가계산서 제출) 보일러 제조업체는 보급대상 보일러 등록 신청 시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작성한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
 - 원가계산은 「예정가격작성기준」(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0호, 2018.6.4.)에 의한 ‘제조원가계산 방식’을 적용하며, 재료비·노무비·경비·일반관리비·이윤 등으로 구성
 - * 보일러의 제조와 설치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설치는 공사원가계산방식에 따름
 -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별히 낮거나 높은 단가를 책정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

【참고】 원가계산용역기관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9조 및 「예정가격작성 기준」(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0호, 2018.6.4. 일부개정) 제31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
 - ▶ 정부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
 - ▶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호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또는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
 - ▶ 「민법」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
 - ▶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

- (기준가격 결정) 산림청은 외부 전문기관에 업체별 보일러 원가에 대한 용역을 별도 의뢰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가격을 결정함
 - 산림청 용역 결과와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가격 중 낮은 가격을 보급기준 가격으로 결정
 - * 산림청 용역 결과에 비용의 누락 및 오류가 있는 경우 7일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, 이의신청이 타당한 경우 재 용역 후 협의 결정 가능
 - 가격을 담합하여 제시하거나 가격을 부풀려 제시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
- (기준가격의 조정)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4조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가격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

Ⅱ 보급사업 지원기준 및 대상자 선정

① 보일러·난로 지원대상(소비자) 및 지원기준

- (지원대상) 목재펠릿보일러·난로 설치 희망하는 자
 - *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 및 단체표준(SPS-KFIC-A-001-2082) 인증 받은 난로 제품에 한하여 지원
 - * 화목보일러(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)는 철거하고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

- (지원용도) 주택용, 임업·농업용, 상업용, 주민편의·사회복지용
 - (주택용) 건축법 제2조제2항의 주택 및 일부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그 밖의 건축물(주민편의·사회복지용 제외)
 - (임업·농업용) 임업·농업용 건축시설(관리사) 및 재배시설
 - (상업용)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건축물
 - (주민편의용)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
 -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, 주차장, 공원, 박물관, 동물원, 수목원 및 휴양림, 문화 및 관광시설, 체육시설, 사회복지시설, 의료시설, 교육시설 및 기타주민편의시설(정보화마을센터, 농업인회관, 독립적으로 설치된 주민자치센터 등),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 등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공동시설
 - (사회복지용)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·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
 - 사회복지시설(사회복지법), 근로자복지시설(근로자복지기본법), 노인복지시설·재가장기요양기관(노인복지법), 복합노인복지시설(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), 한부모가족복지시설(한부모가족지원법), 아동복지시설(아동복지법), 장애인복지시설(장애인복지법), 청소년복지시설(청소년복지지원법) 등
 - *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음
- (지원자격 및 요건)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,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
 - * 건물 임대한 경우 건물주 동의 필요
 - * 폐업업체 보일러 중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이 관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기간에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
- (지원규모) 1세대 당 1대 / 1시설 당 1대
 - 지원대상자로 선정 된 가구는 선정 후 3개월 내 보일러 설치 완료
- (지원금액)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지원금액
 - 목재펠릿보일러 1대당 지원 기준액은 400만원이며, 지원 한도액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변경 가능함. 단, 축열조 설치시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함
 - * (주거용, 임업·농업용, 상업용) 보조금 70%(국고 30%, 지방비 40%), 자부담 30%
 - * (주민편의·사회복지용) 보조금 100%(국고 50%, 지방비 50%)

- 펠릿 난로 1대당 지원 기준액 150만원으로 보조금 70%(주거용 등), 100%(복지용)까지 지원 한도액이며, 이외에는 자부담임
 - * (주거용, 임업·농업용, 상업용) 보조금 70%(국고 30%, 지방비 40%), 자부담 30%
 - 지원 기준액 150만원 중 보조금 70%(105만원)까지 지원가능하며, 이외에는 자부담
 - * (주민편의·사회복지용) 보조금 100%(국고 50%, 지방비 50%)
- (지원범위) 보일러·난로(본체 및 연통, 연료통)·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또는 목재펠릿 포대운반용 리프트 구입비
 - *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(분배기)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,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
 - * 자동리프트 구입비의 지원 기준액은 50만원(지원한도액은 35만원이며, 그 이외는 자부담)
- 사업신청 가구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·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
 - *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

② 지원대상자(소비자)의 선정 및 취소

- (지원대상자 선정)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
 - 단,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사업량에 미달되거나,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여 추가 심의가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시로 접수하고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지원
 - 다음의 경우에는 우선 지원
 - 농산어촌 지역(행정구역상 읍·면) 거주자
 - 국가 보조를 받아 설치한 보일러 중 업체 폐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아 폐기하고 재 지원을 받는 경우
 - 1개 마을(행정구역상 리·동단위)에 5대 이상 집단으로 설치하는 경우
 - 신청자의 중복편중지원여부¹⁾, 지원 제외대상여부²⁾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

1) **중복편중지원여부** : 중복지원 시 당해 연도 선정제외, 유사자금지원 여부(e나라도움, 오프라인)

2) **제외대상여부** :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

- (선정 결과 공개) 선정 즉시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부분 공개함
 - *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르며, 개별적으로 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
- (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)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
 -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
 -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
 - 자부담금(총액의 30%)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
 -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5년(의무사용기간) 이내에 보일러를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
 -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지원 대상자 및 대상지 등 승인사항을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
- (사업 참여제한)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보조사업자(지원대상자)는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함

Ⅲ 보일러·난로의 계약 및 설치

① 표준계약서의 사용

- (표준계약서) 목재펠릿보일러 제조업체와 지원대상자는 <붙임 8>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하여야 함
- (계약서의 변경) 계약서의 임의변경은 불가능하나, 계약 조건은 당사자 간 협의 등에 따라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

② 계좌등록 및 자부담금 납부

- (제조업체 : 계좌등록) 보일러 제조업체는 보조금 및 자부담금을 수령하기 위해 산림청에 입금계좌를 등록해야 함
 - 1회사 1계좌를 원칙으로 함
 - 계좌의 명의는 제조사 또는 대표자만 가능

- (지원대상자 : 자부담금 납부) 지원대상자는 계약과 동시에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일러 제조업체가 산림청에 등록된 계좌에 입금하거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
- 기타사항은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(행정안전부예규 제11호, 2017.9.25.)을 따름

3 보일러·난로 설치 장소

- 공통 사항
 - 설치장소 주위가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을 저장 및 취급하는 장소가 아니어야 함
 - 보일러·난로 조작 및 점검, 수리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
- 옥내 설치 시(난로포함)
 - 보일러 및 보일러에 부설된 금속제의 굴뚝 또는 연도의 외측으로부터 0.3m 이내에 있는 가연성 물체는 금속 이외의 불연성 재료로 피복
 - 보일러에 설치된 계기들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조명시설이 있어야 함
 - 보일러실은 원활한 연소 및 환경 유지를 위해 급·환기구가 있어야 하며, 급기구는 보일러 배기가스 덕트의 유효단면적 이상이어야 함
- 옥외 설치 시(난로제외)
 - 보일러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케이싱 등의 방지설비를 하여야 함
 - 노출된 절연재 또는 피복부위 등에는 방수처리(금속커버 또는 페인트 포함)를 하여야 함
 - 보일러 외부에 있는 난방배관 및 급수관 등이 얼지 않도록 보호조치(보온 등)를 하여야 함

4 보일러 및 난로설치·제조업체 책임사항

- 보일러 및 난로 설치 업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됨
 - 허위·과장광고, 자부담을 받지 않는 등의 위법·부당행위
 - 설치가 부적격한 장소에 설치 또는 기준에 맞지 않는 설치
- 보일러 및 난로하자보수, 자부담 미수납 등 불법 행위 등에 대

한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은 제조업체에 있음

- 설치, 대금청구, A/S 및 보증, 제조물 책임, 제반서류의 제출 등은 모두 제조사 명의여야 함
- 다만, 보일러 및 난로 설치 대행은 제조사 직영 영업점 및 대리점 또는 제조사에서 별도 위탁한 업체가 가능
- * 불법행위 적발 시 영업점, 영업사원, 대리점 등이 하였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음

5 설치완료 및 대금 청구

- 설치가 완료되면 보일러 및 난로 제조업체에서 최종 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금을 청구함
 - 목재펠릿보일러·난로 공급계약서(사본), 청구서, 사업자등록증(사본)
 - 설치완료 확인서(사진 첨부 : 전면, 배관연결 상태 등)
 - 자부담 수취 증빙 서류(입금계좌 사본, 무통장 입금표, 직불카드 영수증), 소비자 교육 증빙서
 - * 입금계좌 사본 및 무통장입금표는 계약금액(자부담 30%)이 매수자 명의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, 제출서류는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추가 또는 제외 가능하나 자부담 수취증빙서와 소비자 교육 증빙서는 반드시 징구
-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의 청구서를 접수한 후 현장을 확인하여 '목재펠릿보일러·난로 지원 기준', 「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」의 '목재펠릿보일러·난로 시공기준'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 후 20일 이내 보조금을 지급함
 - * 보조사업자(지원대상자)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위에 준하는 증빙서를 보조사업자로부터 징구하여야 함
- 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 받은 보조금을 20일 이내에 보일러 설치업체에 지급함

☞ '17년 예산부터 사업 공모, 신청, 선정, 교부, 정산, 사후관리 등 보조금 처리과정을 통합관리시스템(e호조 또는 e나라도움)으로 수행하여야 함

IV 보급제품 품질보증 및 위반업체 처분사항

① 열효율 개선명령

- 품질보증 기간 내에 열효율이 80%*미만임이 발견된 제품은 산림청장의 ‘열효율 개선명령’에 따라야 함
 - 열효율 저하에 대한 민원 발생시 ‘사후관리 모니터링(전문기관에 시험의뢰)’을 통해 보일러의 열효율을 시험 후 조치
 - 단, 소비자 과실로 인한 효율 저하로 판명되는 경우는 제외
- *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-99호)의 가정용 가스 보일러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
- 개선 명령 시 제조업체는 해당제품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소비자와 산림청장에게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함

② 부품 개선명령

- 보급대수의 3% 이상에서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산림청장의 ‘부품 개선명령’에 따라야 함
 - 보급실적 대비 동일하자 민원건수 기준 3% 이상 발생 시 조치
 - 단, 소비자 과실로 인한 하자로 판단된 경우는 제외
- 개선 명령 시 제조업체는 해당제품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소비자와 산림청장에게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함

③ 제품 교환 및 환불

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품교환 및 구입가 환불을 하여야 함
 - ① 설치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·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
 - ② 동일 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(3회째)한 때
 - ③ 수리 및 교환 불가능시
 - ④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(5회째)한 때
 - ⑤ 설치 후 3개월 이내에 열효율이 보일러 기본요건 미만인 제품이 발견된 때
- *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

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

-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
-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시공 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상 수리 또는 배상(시공업자 책임)
-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·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는 무상 수리
-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(부품의무 보유기간 이내)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해결하여야 함

① 품질보증기간 이내

-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·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환급
- 소비자의 고의·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는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

②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

-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%를 가산하여 환급
- * 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- 감가상각비

❖ 감가상각법은 정액법에 의하며, 내용연수는 “소비자분쟁해결기준”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를(월할 계산) 적용
◆ 감가상각비 = (사용연수/내용연수)×구입가

- 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'12년 인증제 도입 이전에 설치한 보일러(폐업업체 제외)에 관하여는 “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-2호, 2018.2.28.)”에 따름

4] 자격 정지

-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급사업 자격을 3개월 한도 내에서 정지할 수 있음
- ① 제품 교환 및 환급 요청, 열효율 및 부품 개선명령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, 단 기술 개발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

- 경우로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는 3개월 한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
- ② 제품 교환 및 환급, 열효율 및 부품 개선명령이 3회 이상인 제품
 - ③ 3일 이내 하자보수 미 이행 시
 - ④ 연료 무상지원, 설치자 부담금 대납 등 불공정 거래, 1일 이상 A/S센터 연락 불가, 보급현황 신고의무 위반 등 부당한 업무처리가 발견된 경우
 - ⑤ 보일러실이 없이 처마 등 외부에 보일러를 노출하여 설치하는 등 보일러 설치 기준을 위반하여 설치하는 경우
 - ⑥ 보일러로 인하여 화재 등 인적·물적 피해가 발생한 때

⑤ 등록 취소

-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, 소명기회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
 - ① 자격 정지 후 제품 교환 및 환급 요청, 열효율 및 부품 개선명령 등이 정지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은 경우
 - ② 동일 제품의 교환 및 환급, 열효율 및 부품 개선명령이 5회 이상인 경우
 - ③ 산림청(산림청장이 위탁한 기관 포함)이 실시하는 설치·사후관리 모니터링 결과 제조·설치 업체의 하자로 인하여 보일러에 문제가 발생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
 - * 기술개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치시한을 명시하여 조치계획을 제출
 - ④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 설치,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설치, 자부담을 받지 않고 보일러 설치한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
 - ⑤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보조사업자에게 설치한 제조·설치 업체
 - * 등록 취소 후 2년간 사업 참여 제한
 - ⑥ 산림청에 등록된 보일러를 임의 변경하여 설치한 제조·설치 업체
 - * 다만, 성능향상을 위한 경우로써 설치 가구의 서면동의를 받고 변경한 경미한 변경은 가능
 - ⑦ 등록신청서류, 원가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
 - ⑧ 등록된 목재펠릿보일러에 대하여 허위·과장광고를 실시한 제조·설치 업체

【참고】 등록취소 절차

- 문제발생 → 조치요청(2회) → 최후통첩(1회) → 청문 또는 의견진술(최후통첩 후 7일 이내에 청문회 또는 공문을 통한 의견진술) → 등록 취소
- 단, ④,⑤ 항의 경우는 등록취소 절차 없이 취소 가능

⑥ 기타 사항

- 보급사업 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열효율 및 부품 개선, 제품 교환 및 환급, 자격정지, 등록취소 등의 요청을 할 수 있음
 - 이 경우 산림청 또는 사후관리 모니터링 수행자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치여부 결정

V 제조업체의 소비자 교육·안내 및 점검 이행

① 소비자 교육·안내

- 보일러 제조업체는 소비자 안내문과 펠릿 구매처 정보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교육하고, 보일러 또는 보일러실에 부착하거나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

② 정기점검

- 집단으로 설치된 마을은 설치·제조업체 여건에 따라 매년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

VI 사후관리 및 보급현황 제출

① 사후관리 (A/S 등)

- 제조업체는 A/S 등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설치 가구에 제출하여야 함

-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(하자)보증보험증권(3년, 요율 3%)

- ②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
- ③ 보일러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(3년)
- ④ 보일러 설치·운영 세부사양서
- ⑤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(무상 하자보수와 유상보수 기준 포함)
- ⑥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(업체명, 연락처 등)
- ⑦ 소비자안내문 및 펠릿 구매처 정보
- ⑧ 제조업체와 설치업체가 다를 경우 설치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

○ 소비자(지원대상자)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보일러의 용도변경·양도·교환·대여 및 폐기 할 수 없음

-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

| 재산명 | 사후관리기간 | 처분제한기준 | 비 고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--|
|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| 5년 (준공일 기준) | 용도변경·양도·교환·대여 및 사후관리기간 내 폐기는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| 폐업업체 보일러 중 파손·고장 등으로 수리비 과다 소요, 수리 불가능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폐기 처분가능 |

* 개정일 이전에 보급된 목재펠릿 보일러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

2] 보급현황 제출

- 보일러 제조업체는 다음 서식에 따라 보일러 보급현황을 상·하반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의무적으로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함
- 모델별 설치 수량 * 문서와 엑셀파일 제출

| 제조사 | 모델명 | 보급단가 (원) | 설치수량 | | | 비고 |
|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|----|
| | | | 누계 | 상반기 | 하반기 | |
| | | | | | | |

- 가구별 설치내역(금분기) * 문서와 엑셀파일 제출

| 모델명 | 금액(원) | 설 치 가 구 | | | |
|-----|-------|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|
| | | 성명 | 주 소 | 연락처 | 자부담금(원) |
| | | | | | |

VII 기타 참고사항

①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정보, 열효율 및 부품 개선명령, 제품 교환 및 환급, 자격정지, 등록취소 등의 경우에는 상세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음

○ 제출 서류 중 공개가 불가능한 사항은 사전에 공개금지 요청

② 목재펠릿보일러·난로 제조업체는 보일러(난로) 목표수명을 장기적으로는 20년 이상으로 하되, 최하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함

○ 보일러 등록서류에는 현재 사실을 바탕으로 목표수명 기재하고, 보일러 부품은 최하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함

* 부품보유기간의 기산 :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

○ 주요 부품의 거래·판매처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산림청에 보고

③ 펠릿난로의 지원 기준, 절차 및 사후관리 등은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을 준용

【붙임1】

보급대상 보일러 등록 신청서

| | 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|
| 업 체 명 | | | 제조형태 | | |
| 사업자등록번호 | | | 업태·종목 | | |
| 업체소재지 | | | | 연락처 | |
| 재무상태 | 자산 | 원 | 부채 | 원 | 자본 원 |
| 모델명 | | | | 보일러목표수명 | 년 |
| 품질인증번호 | | | | 시험검사기관 | |
| 보급희망가격 (제세비용 포함) | 총 액 | | 보 일 러 | | 축 열 조 |
| | 원 | | 원 | | 원 |
| 원가계산용역 기관산출원가 | 원 | | 원가계산용역기관 | | |
| | *부가세 및 설치비 포함 | | | | |
| 열 효 율 | 진발열량기준 | % | 연료소비량 | kg/h | |
| 배기가스온도차 | ℃ | | 잔재중미연소분 | % | |
| 점 화 기 | 점화소요시간 | 분 | | 정격전압 | kw |
| 연료 공급 장치 모터 | 제 조 사 | | | 모델명 | |
| | 최대출력 | kw | | 정격전압 | kw |
| 청소장치 | 청소장치 부착 장소, 구동원리 등 간략히 기재 | | | | |
| <p>상기 제품을 산림청 보급사업에 참여코자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등록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등록자 : 000000(대표 0000)(인)</p> <p>산림청장 귀하</p> | | | | | |
| <p><붙임></p> <p>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 ② 업체현황서</p> <p>③ 최근 3년간 목재펠릿보일러 설치실적 1부(실적이 있는 경우). ④ 직접생산자확인서 1부</p> <p>⑤ 각종 인증 및 특허 등에 관한 서류(해당시). ⑥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 서류 1부</p> <p>⑦ 보일러 설계도서 및 원가계산서. ⑧ 보일러 설치·운영 요령 1부</p> <p>⑨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계획(무상 하자보수와 유상보수 기준 포함)</p> <p>⑩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(하자)보증보험증권(3년, 요율 30%) 사본 1부.</p> <p>⑪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1부. ⑫ 품질보증서(3년) 사본 1부.</p> <p>⑬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.</p> | | | | | |

【참조 1】

등록신청시 제출서류

- ① 등록신청서 1부
-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③ 업체현황서 1부
 - 소재지, 제조공장 현황, 직원현황, 자격증 소지자 현황, 재무상태(자산·부채 현황) 등
 - 재무상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반드시 첨부
- ④ 최근 3년간 목재펠릿보일러 설치실적 1부(실적이 있는 경우)
- ⑤ 직접생산자확인서 1부(중소기업에 해당)
 - * 단, 대기업인 경우에는 “대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, 공장등록증, 건축물대장, 생산시설리스트, 현황사진<전경, 시설근경 등>” 제출
- ⑥ 각종 인증 및 특허 등에 관한 서류(해당 시)
 - ISO인증업체, KS표시허가업체, 생산성 향상 우수기업, Q마크획득업체,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 표시업체, 특허 등
- ⑦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 받은 보일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
(시험성적표 및 저위발열량기준 열효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)
- ⑧ 인증받은 보일러 설계도서 및 원가계산서 등
 - 설계도면 : A3 용지로 제출
 - 보일러 목표수명 계산서, 목표수명 설정 근거 서류 1부
 - 주요 자재 내구성 설명서를 통해 목표수명 설명 가능
 - ※ 연소실, 청소장치, 연관 등의 내열성·내부식성, 스크류, 모터류 등 부품의 수명 등
 - 원가계산서 : 용역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(*전산파일 별도 제출)
 - 부품현황서 : 부품제조사, 원산지, 모델명 등
 - 사진자료 : 보일러 본체(전면, 측면, 후면) 및 주요부품(버너, 점화장치, 연료공급장치, 청소장치, 제어장치, 실내조절기)
 - PCB에 대한 로직정보·샘플 및 제어기 부착 센서에 대한 정보
- ⑨ 보일러 설치·운영 요령 1부
- ⑩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계획(무상 하자보수와 유상보수 기준 포함)
- ⑪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(하자)보증보험증권(3년, 요율 3%) 사본 1부
- ⑫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1부
- ⑬ 품질보증서(3년) 사본 1부
- ⑭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

【참조 3】

주요 부품 현황서

| 부품명 | 생산·판매자 (연락처) | 원산지 | 재질·규격· 모델명 | 품질·성능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연소실 벽체 (금속부분) | OO 철강 (042-000-0000) | 한국 | SSS??? | 내열강도 ?? 등 |
| 버너 | | | 금속, 주물 등 | |
| 연소기청소장치 | | | | |
| 연관청소장치 | | | | |
| 연료공급스크류 | | | | |
| 연료공급 모터 | | | | |
| 공기주입 모터 | | | | |
| 컨트롤 | | | | |
| 실내온도조절기 | | | | |
| 점화장치 | | | | |
| 역화방지장치1 (정전시 작동) | | | | |
| 역화방지장치2 | | | | |
| 축열조(온수통) | | | | |
| | | | | |
| | | | | |

- ※ 부품현황서는 소비자에게 공개예정이니 품질, 성능, 구동원리 등을 자세히 기재 요망
- ※ 위에 정한 부품은 반드시 기재하고, 기타 부품은 업체 자율. 다만, 해당부품을 사용하지 않는 모델인 경우 해당 부품이 없어도 되는 이유를 명시

【붙임 2】

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심의 평가서(안)

* 심의기준

- ① 인증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, 제반서류 미제출 등은 당연 탈락
- ② 가격 적정성 평가결과 가격조정이 필요한 경우 가격 협상 필요
- ③ 붙임 평가표에 따라 심의한 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
- ④ 70점 이상인 경우라도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개선되지 않은 경우 불합격

□ 심의대상 업체 및 대상보일러 :

○ 보일러 가격 적정성 평가결과 : 적정, 가격조정 필요

| 심 의 항 목 | 배 점 | 심의위원 점수 | 비 고 |
|---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|
| 합 계 | 100 | | |
| 1. 내구성 | 30 | | |
| 1) 적정 | 30 | | |
| 2) 보통 | 20 | | |
| 3) 미흡 | 10 | | |
| 2. 사후관리계획 | 30 | | |
| 1) 적정 | 30 | | |
| 2) 보통 | 20 | | |
| 3) 미흡 | 10 | | |
| 3. 품질개선노력 | 20 | | |
| 1) 적정 | 20 | | |
| 2) 보통 | 10 | | |
| 3) 미흡 | 5 | | |
| 4. 업체의 견실성 | 20 | | |
| 1) 적정 | 20 | | |
| 2) 보통 | 10 | | |
| 3) 미흡 | 5 | | |

20 년 월 일

○ 평가자 소속 :

성명 : (서명)

【붙임 4】

소 비 자 안 내 문

1. 우리회사의 목재펠릿 보일러는 열효율이 ()% 이며, 연료비가 난방용 등유(2000년 0월 기준)와 비교할 때 약 ()% (비싼 또는 싼) 것으로 평가 됩니다.

* 목재펠릿가격은 운반비가 포함된 가격 적용

2. 목재펠릿 보일러는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야 하고, 펠릿을 보일러 연료공급 장치에 넣어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.
3. 우리회사 목재펠릿 보일러는 다음과 같이 청소를 해야 합니다.

- 가. 청소장소 1 : 대상, 주기, 요령
- 나. 청소장소 2 : 대상, 주기, 요령
- 다. 청소장소 3 : 대상, 주기, 요령

.....

4. 우리회사 목재펠릿 보일러에는 1등급 목재펠릿만 사용해야 합니다.
5. 우리회사 목재펠릿 보일러는 다음과 같은 고장일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조치하실 수 있습니다.

- 가. 000 할 때
- 나. 000 할 때
- 다. 000 할 때

6. 우리회사 목재펠릿 보일러에 문제가 생기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
 - 가. 지역 A/S 업체 :
 - 나. 본사 A/S 신고 접수 :

7. 다음과 같은 경우는 A/S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- 가. 자부담을 하지 않은 경우
 - 나. 1등급 펠릿을 사용 않은 경우

제 조 사 명

【붙임 6】

목재펠릿보일러 · 난로 공급계약서

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|
| 계 약 당사자 | 소 비 자 | (인) | 생년월일 | | 년 월 일 | |
| | | | 주 소 | | | |
| | | | 연 락 처 | 사 무 실 | | |
| | | | | 핸 드 폰 | | |
| | 공 급 업 체 | (주) 〇 〇 〇 (인) | | 대 표 자 | 성 명 | |
| | | | | | 사 업 자 등록번호 | |
| | | | 주 소 | | | |
| | | | 연 락 처 | 사 무 실 | | |
| | | | | 핸 드 폰 | | |
| | | | | A / S | | |
| 계 약 내 용 | 모 델 명 | | | | 수 량 | |
| | 공급금액 | 총 액 | 계약금액(자부담금) * 총액의 30% | | 잔액(보조금) * 총액의 70% | |
| | 설치장소 (주소) | | | | | |
| | 설치기간 | 년 월 일 ~ 년 월 일 | | | | |
| | 계약 조건 | 일반 | * 뒷면의 계약조항과 같음 | | | |
| | 특수 | | | | | |
| 입금 계좌 (산림청 등록 계좌) | | | | | | |
| 계 약 일 자 | | 년 월 일 | | | | |
| 첨 부 서 류 | |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“이행(하자)보증보험증권(3년, 요율 3%)” ②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③ 보일러(난로)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(3년) ④ 보일러(난로) 설치·운영 세부사양서 ⑤ 보일러(난로)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⑥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 ⑦ 소비자안내문 및 펠릿 구매처 정보 ⑧ 계약금(자부담) 무통장 입금표 및 입금 계좌 사본 | | | | |

* 뒷면의 계약 일반조건을 확인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.

받아야 하며 매수인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인수받아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.

제4조(사후관리 및 A/S) ① 매도인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년간 “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”에 따라 무상A/S와 유상A/S를 구분하여 성실히 A/S를 하여야 한다.

②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이행(하자)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매도인은 품질보증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는 품질이 유지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.

제5조(계약의 해지) ① 매도인과 매수인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②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.

제6조(보조금의 환수) ① 매수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없이 5년 이내에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, 매수인이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고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.

②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고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.

* 매수인은 자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약속하며 자부담 미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함(서명)

* 매도인은 자부담금을 납부받을 것을 약속하며 자부담 미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함(서명)

제7조(사용자 교육) ① 매도자는 매수인이 해당 보일러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*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보일러의 운용과 사후관리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받았으므로 보일러 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음(서명)